

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4] <개정 2023. 7. 3.>

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과징금 부과기준(제77조의2제1항제2호 관련)

과징금 부과사유	과징금 부과율
1.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·감리를 한 자	
가. 부실벌점이 150점 이상인 자	30%
나. 부실벌점이 100점 이상 150점 미만인 자	15%
다. 부실벌점이 75점 이상 100점 미만인 자	12%
라. 부실벌점이 5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	9%
마. 부실벌점이 35점 이상 50점 미만인 자	6%
바. 부실벌점이 20점 이상 35점 미만인 자	3%
2.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조잡하게 한 자	
가. 공사	
1) 하자비율이 100분의 500 이상인 자	30%
2) 하자비율이 100분의 3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인 자	15%
3) 하자비율이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300 미만인 자	12%
4) 하자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인 자	4.5%
나. 물품	
1) 보수비율이 100분의 25 이상인 자	30%
2) 보수비율이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5 미만인 자	15%
3) 보수비율이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인 자	12%
4) 보수비율이 100분의 6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자	4.5%
3. 법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의 이행을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	
가. 설계서(물품제조의 경우에는 규격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와 달리 구조물 내구성 연한의 단축, 안전도의 위해를 가져오는 등 부당한 시공(물품의 경우에는 제조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을 한 자	15%
나. 설계서상의 기준규격보다 낮은 다른 자재를 쓰는 등 부정한 시공을 한 자	9%
다. 가목의 부당한 시공과 나목의 부정한 시공에 대하여 각각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자	4.5%
4.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	
가.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	30%

나. 입찰 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해 담합을 주도한 자	20%	
다.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,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	15%	
5.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		
가.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에게 하도급한 자	20%	
나.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한 자	15%	
다. 면허·등록 등 관련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도급한 자	15%	
라.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	12%	
마. 재하도급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	10%	
바. 하도급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자	10%	
사. 하도급 거짓 통보자	10%	
6. 법 제3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		
가.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자	30%	
나. 지방자치단체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	15%	
7. 법 제31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		
가. 이 제한기준에서 정한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	해당 각 호의 기준에 따름	
나. 이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	9%	
8. 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		
가. 2억원 이상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30%	
나.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15%	
다.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9%	
라. 1천만원 미만의 금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준 자	4.5%	
9. 법 제3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	9%	
10. 영 제92조제2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자		
가. 입찰에 관한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위조·변조·부정 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낙찰을 받은 자	15%	
나.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(제15조제2항에 따른 입	9%	

찰 참가자격 등록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위조·변조·부정행사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	
11. 영 제92조제2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	9%
12. 삭제 <2023. 7. 3.>	
13. 영 제92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자	4.5%
14. 영 제92조제2항제1호마목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자	4.5%
15. 영 제92조제2항제1호사목에 해당하는 자	4.5%
16. 영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	
가.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자	9%
나.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 심사 또는 영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 계획,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및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	1.5%
다. 영 제5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	1.5%
라. 영 제88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하고, 공동계약에서 정한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자	1.5%
마.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	1.5%
17. 영 제92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자	
가. 고의에 의한 경우	9%
나.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	9%
18. 영 제92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자	4.5%
19. 영 제92조제2항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자	12%
20. 영 제92조제2항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자	
가.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장 내외에서 2명 이상(근로자의 경우 다목을 적용한다)에게 인명피해를 입혔거나 사업장 외의 시설을 손괴한 자	15%
나.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외의 공중에게 재산상의 피해를 가한 자	9%
다. 사업장에서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자	
1)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	30%

2)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6명 이상 10명 미만인 경우	20%
3) 동시에 사망한 근로자수가 2명 이상 6명 미만인 경우	15%
21. 영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자	
가. 정보 누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	4.5%
나. 정보 누출 횟수가 1회인 경우	1.5%

비고

1. 위 표에서 "부실벌점"이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53조에 따른 부실벌점을 말한다.
2. 위 표에서 "하자비율"이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결과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하자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.
3. 위 표에서 "보수비율"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 발생 누계금액 비율을 말한다.